
2017년 양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양 주 시
기획예산담당관

목 차

□ 2017년 양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
□ 공통공시 총괄	3
1. 공통공시 총괄	3
2. 예산규모	4
2-1. 세입예산	4
2-2. 세출예산	5
2-3. 중기지방재정계획	6
2-4. 지역통합재정통계	7
3. 재정여건	8
3-1. 재정자립도	8
3-2. 재정자주도	9
3-3. 통합재정수지	11
4. 재정운용계획	13
4-1. 성인지 예산현황	13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14
4-3. 성과계획서	16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7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8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19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0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1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1
□ 유사단체 분류	22

2017년 양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양주시장



- ◆ 우리 시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381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23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499억원)보다 118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61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013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40억원입니다.
- ◆ 우리 시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8.09(33.1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 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1.01(66.08)%입니다.
- ◆ 우리 시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28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단체 평균보다 재정규모는 적으나, 채무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재정건정성이 우수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조금심의, 투자심사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이정연(031-8082-5073)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양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6,381	5,858	523	6,499	5,938	562
	세 출 예 산	6,381	5,858	523	6,499	5,938	562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8.09	38.94	△0.85	31.43	31.18	0.25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71.01	70.02	0.99	67.5	66.34	1.16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28	111	17	12	1	1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유사단체 분류 : 시-(3) / 2016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적용/※p22참고
- ※ 인구,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표준화 지수값을 구한 다음 인구, 재정력, 재정규모는 각 30%, 인구증가율은 10%의 가중치를 부여함
- ※ 예산규모 : 일반, 특별회계(공기업,기타), 기금 포함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38,091	486,575	103,404	35,490	12,62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11,347	497,853	488,945	585,827	638,09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합 계	410,427	100.00	402,057	100.00	408,682	100.00	467,907	100.00	486,575	100.00
지방세	105,428	25.69	107,769	26.80	108,245	26.49	115,041	24.59	126,490	26.00
세외수입	25,139	6.12	16,403	4.08	17,119	4.19	43,157	9.22	34,814	7.15
지방교부세	95,953	23.38	101,000	25.12	94,500	23.12	111,500	23.83	121,016	24.87
조정교부금 등	24,590	5.99	23,394	5.82	33,313	8.15	33,917	7.25	39,209	8.06
보조금	159,317	38.82	141,991	35.32	140,005	34.26	140,292	29.98	141,036	28.99
지방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11,500	2.86	15,500	3.79	24,000	5.13	24,010	4.9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38,091	486,575	103,404	35,490	12,62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11,347	497,853	488,945	585,827	638,09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합 계	410,427	100.00	402,057	100.00	408,682	100.00	467,907	100.00	486,575	100.00
일반공공행정	36,750	8.95	29,673	7.38	40,815	9.99	46,274	9.89	43,380	8.92
공공질서및안전	5,043	1.23	6,199	1.54	4,670	1.14	2,270	0.49	2,626	0.54
교육	7,020	1.71	7,876	1.96	8,347	2.04	8,583	1.83	11,104	2.28
문화및관광	26,546	6.47	19,760	4.91	20,716	5.07	20,313	4.34	29,507	6.06
환경보호	54,149	13.19	39,073	9.72	41,743	10.21	42,749	9.14	28,028	5.76
사회복지	114,694	27.94	132,254	32.89	126,515	30.96	145,019	30.99	153,716	31.59
보건	5,090	1.24	5,253	1.31	6,892	1.69	7,693	1.64	8,689	1.79
농림해양수산	23,874	5.82	23,097	5.74	23,978	5.87	38,363	8.20	23,325	4.79
산업·중소기업	15,237	3.71	2,069	0.51	3,561	0.87	4,060	0.87	7,292	1.50
수송및교통	39,410	9.60	53,916	13.41	46,745	11.44	57,979	12.39	49,248	10.12
국토및지역개발	23,303	5.68	17,967	4.47	22,624	5.54	26,069	5.57	38,026	7.8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6,422	1.56	8,497	2.11	5,015	1.23	5,590	1.19	8,431	1.73
기타	52,889	12.89	56,421	14.03	57,060	13.96	62,945	13.45	83,204	17.1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22,308	731,689	741,252	748,252	760,833	3,704,334	1.30%
자 체 수 입	215,836	223,179	220,015	227,882	236,133	1,123,045	2.30%
이 전 수 입	380,182	387,038	394,126	401,151	408,319	1,970,816	1.8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6,291	121,472	127,110	119,218	116,382	610,473	-2.00%
세 출	722,308	731,689	741,252	748,252	760,833	3,704,334	1.30%
경 상 지 출	146,885	146,089	152,298	147,030	146,861	739,163	0.00%
사 업 수 요	575,424	585,599	588,954	601,222	613,972	2,965,171	1.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595,490	649,404	53,914	9.05
우리시	585,827	638,091	52,264	8.92
공사·공단	9,363	10,313	950	10.15
출자·출연기관	300	1,000	700	233.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단(1개) : 양주시시설관리공단
- ▶ 출연기관(1개) : 양주시희망장학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8.09(33.1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8.09 (33.15)	486,575 (486,575)	185,313 (161,304)	301,261	0	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과목으로 변경되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우리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40.09(30.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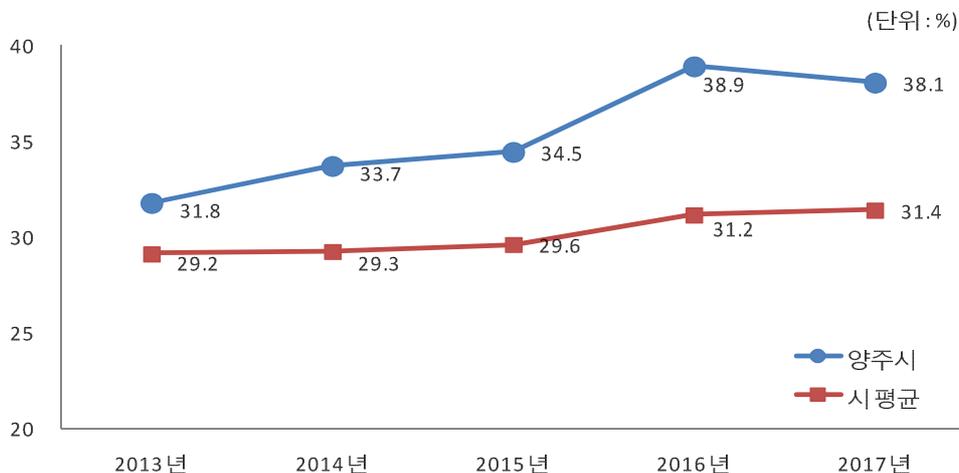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0.09 (30.2)	570,363 (570,363)	228,638 (172,247)	341,724	0	0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31.81	33.74 (30.88)	34.47 (30.68)	38.94 (33.81)	38.09 (33.15)
최종예산	31.75	38.10 (31.16)	34.90 (28.11)	40.09 (30.2)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는 유사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고 2016년도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2017년도에는 U-city사업 추진을 위한 LH 협약금 100억 원 부담 및 양주신도시 분양에 따른 인구증가 등 연도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짐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1.01(66.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1.01 (66.08)	486,575 (486,575)	345,538 (321,529)	141,036	0	0 (24,01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과목으로 변경되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우리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70.84(60.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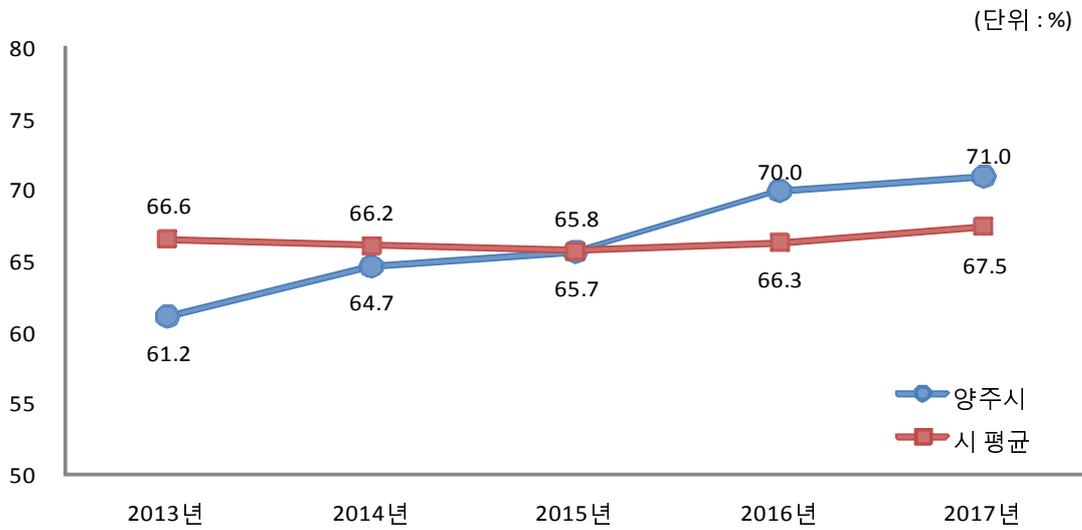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0.84 (60.95)	570,363 (570,363)	404,021 (347,630)	166,342	0	0 (56,391)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1.18	64.68 (61.82)	65.74 (61.95)	70.02 (64.89)	71.01 (66.08)
최종예산	61.24	68.36 (61.41)	66.26 (59.48)	70.84 (60.95)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의 증가와 함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결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42,719	580,688	416	7,600	7,184	57,944	587,872	-45,153	12,791
일반회계	462,565	455,530	10	4,730	4,720	24,000	460,251	2,314	26,314
기타 특별회계	6,091	21,056	407	600	193	23,064	21,249	-15,158	7,906
공기업 특별회계	73,449	101,059	0	2,270	2,270	10,880	103,329	-29,880	-19,000
기 금	614	3,043	0	0	0	0	3,043	-2,429	-2,429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당초예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29,334	-20,479	-24,053	-31,077	-45,153
통합재정수지 2	3,617	504	815	11,131	12,791

☞ 통합재정 산출에 있어서 회계간 거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회계간 거래 즉 정부의 금융활동으로 간주되는 보전재원은 제외처리함. 이에 통합재정수지 1에서 우리 시의 적자 수치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데, 이는 특별회계의 세입이 대부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며, 이에 통합재정수지 2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79억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127억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우리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91,973	661,518	374	20,570	20,196	103,838	681,714	-89,740	14,098
일반회계	513,971	521,437	6	15,200	15,194	51,449	536,631	-22,660	28,789
기타 특별회계	13,972	25,172	368	3,100	2,732	19,094	27,904	-13,933	5,161
공기업 특별회계	63,418	113,444	0	2,270	2,270	33,296	115,714	-52,296	-19,000
기 금	612	1,465	0	0	0	0	1,465	-852	-852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최종예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8,384	-36,307	-62,287	-39,068	-89,740
통합재정수지 2	12,276	7,761	3,378	14,937	14,098

☞ 최종예산기준으로, 사업시기 부족에 따라 세출로 편성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 이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에서는 흑자를 보임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9	25,21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	2,85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7	19,97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2,389

-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 수요자 성별구분없이 모두가 균등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예산제도 확립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17 성인지 예산서](#))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전년도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17년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86,575	- (의견 제시 21건)*	모델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우리시는 예산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편성 전 예산 낭비사례나 우선 편성 사업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이 적절이 운용되도록 하고 있음.

❖ 표준모델(모델유형은 지자체 조례 내용 구성으로 구분)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의견제시 주요 사업내역

부서명	사업명	의견제시
기획예산담당관	종합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0.추진성과의 공정하고 명확한 평가 운영요
미디어정보담당관	영상장비 등 기기구입	0.영상장비,app구입 등 비슷한 내역 중복여부 검토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0.주민자치예산지원(공과금) 자체 수익금 처리검토⇒ 수익금은 강사료등에 소요되고 있어 공과금지원하고 있음. 0.활동수당 인상 ⇒3만원/월1회지급, 경기도 내 비교 시 적정(2만원:7개, 3만원:9개,3만원초과 14개시군)
민원봉사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0.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도 연계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1항에 의거 지원,
사회복지과/ 주택과	백석읍 복지1리 경로당 증축	0.3층 증축공사 검토⇒복지1리 남자경로당 이전문제 및 1층 상가 임대 등으로 증축필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건립	0.양주체육복지센터 내 말고 별도의 시설확충 ⇒향후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검토
여성보육과	어린이 종합안전체험관 및 어린이 문화센터 설치	0.이용활성화방안 검토⇒문화센터는 권역별 설치예정이며, 복합가족체험공간으로 활용
문화관광과	양주 YOUNG문화축제	0.현재 어울림 사업과 다른점 ⇒어울림마당은 (사)한국BBS 추진, YOUNG문화축제를 위해 정연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로 축제를 구성 추진계획임
체육청소년과	청소년 문화공간	0.지역별 청소년공간 필요 ⇒18년 옥정지구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원, 도서관 공간활용등 방안 검토
환경관리과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0.사업내역 적절히 검토요 ⇒시민 환경보전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실시
도시계획과	덕정 구도심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사업	0.덕정 구 파출소 리모델링 제검토⇒공간 활용하여 지역상인 마케팅교육, 대학생 군장병 등 창·취업 교육지원 등 지역활성화센터로 활용코자 함
안전건설과	재난안전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 대응훈련	0.재난안전 대응훈련 확대추진⇒연간3회이상 실시, 공동주택 등 관리주체 참여 확대
보건사업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과 예산활용 (건강증진센터 생애주기별 사업)	0.임신 및 출산장려지원사업 추진 및 다양한 홍보 요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처리	0.사업자선정방법⇒2016년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
	RFID 개별 종량제 기기 구입 보조금	0. 노후화된 RFID 기기 교체를 원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보조금(50%)지원
상하수과	지하수 보전 및 관리 사업	0.지하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노후유량계 교체
공원산림과	사방사업	0. 대상지 확대검토⇒금년도 2개소 선정(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실시, 시에서 부담금 지원), 향후 대상지 추가 검토
	가로수 유지관리	0.양주신도시 옥정지구 공공시설 이관이첩에 따른 예산반영
교육진흥원	교육청과의 대응사업 검토	0.교육청과 업무 협의 및 협조를 통한 적절한 교육지원사업 추진
	청소년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0.금년도 다양한 분야의 진로체험프로그램 등 지원
백석읍	홍복생태학습장	0.계절별 다양한 식물군 조성, 어린이 등 활용도 높게 구성토록 하겠음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13	109	239	225	522,064	502,890	19,174
시정혁신담당관	1	3	3	3	83	372	-289
기획예산담당관	1	3	6	7	24,915	29,293	-4,378
미디어정보담당관	1	7	9	10	7,214	5,764	1,450
감사담당관	1	1	4	0	115	80	35
자치행정국	1	17	32	32	73,268	68,329	4,938
복지문화국	1	19	41	47	183,307	163,513	19,794
경제교통국	1	13	40	27	45,414	36,663	8,751
도시주택국	1	20	34	32	64,094	66,642	-2,548
보건소	1	2	14	14	8,407	7,411	997
농업기술센터	1	6	16	17	21,460	36,279	-14,819
도시환경사업소	1	14	30	27	71,059	69,184	1,875
교육진흥원	1	3	5	7	14,342	13,086	1,256
의회사무과	1	1	5	2	1,384	1,037	346
읍면동사무소	0	0	0	0	7,002	5,237	1,765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17 성과계획서](#))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8.09	71.01	31.59	34.04	44.32	30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 금액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재정운용상황개요서](#))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9	0
	부단체장	56	5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12	394	-11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6 ○ 위원 1인당 4,800천원 ○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계상가능	45	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7	46	-10
	의원국외여비	26 ○ 의원 정수×2,000천원 - 25%범위 자율 조정	26	0
지방보조금		10,013 (100% 시비 편성 한도액)	9,469	-54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장 - 기본수당:200천원/월 - 연 상여금 200% - 회의 참석수당:20천원 ○반장수당 : 연50천원	좌동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32천원/인	좌동	0
공무원 일·숙직비		50천원/인	좌동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이 관리되고 있어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됨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047	154
인건비 절감	2	159
지방의회경비 절감	9	19
업무추진비 절감	212	24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32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461	-1,170
지방청사 관리·운영	2,853	901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14,126	4,157
지방세 징수율 제고	2,319	-1,146
지방세 체납액 축소	-7,906	-8,386
경상세외수입 확충	954	1,97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8,738	12,516
탄력세율 적용	-737	-755
지방세 감면액 축소	-18	-48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12.30.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6년에 우리 우리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303
법령위반 과다지출	물품납품기한부당연장	17
수입징수 태만	부동산실명법위반자에대한처리부적정	558
수입징수 태만	불법가설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산정부과부적정	21
법령위반 과다지출	농어촌테마공원조경식재공사수의계약부적정	102
수입징수 태만	산지복구비 예치 관련 사후관리 부적정	340
법령위반 과다지출	광백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선정 부적정	265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6년에 우리 우리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20
시군 평가	지자체 정부3.0 추진 평가	50
시군 평가	정부합동평가	7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붙임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남 (신)창원시	경기 부천시 충북 (신)청주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경기 평택시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기 시흥시 경기 안성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익산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전남 여수시 경남 거제시
	시-(3) 19개	경기 군포시 경기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목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충남 보령시 경북 김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안동시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충남 논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구리시 강원 삼척시 충남 당진시
	시-(4) 20개	경기 의왕시 강원 속초시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경기 과천시 충남 계룡시 전남 광양시 경남 통영시	강원 동해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주시 경남 사천시	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경북 영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충남 예산군 전남 장흥군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인천 강화군 충북 음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무안군	인천 옹진군 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군-(2) 20개	경기 가평군 충북 진천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경기 연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울진군	강원 평창군 충남 금산군 전남 영암군 경남 창녕군	강원 정선군 충남 서천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	충북 영동군 충남 태안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고성군 전북 임실군 경북 청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양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성주군	강원 철원군 충북 보은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예천군	강원 양구군 충북 옥천군 전남 영광군 경남 하동군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 전남 장성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강원 화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진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충북 단양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충남 청양군 전남 구례군 경북 청송군 경북 울릉군	전북 진안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군	전북 무주군 전남 함평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자치구	구-(1) 13개	서울 중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북구 서울 양천구 서울 송파구	서울 도봉구 서울 강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구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초구
	구-(2) 12개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관악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금천구	서울 광진구 서울 영등포구
	구-(3) 22개	부산 진구 부산 사상구 인천 중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서구
	구-(4) 22개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울산 북구	부산 동구 부산 연제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부산 영도구 부산 수영구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부산 동래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 2016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